

상담심리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가능 구분	관련 자격증
학부 재학 또는 졸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심리지도사 1급(민간자격증) 2. 청소년상담사 3급(국가자격증) 3. 전문상담사 2급(민간자격증) 4. 임상심리사 2급(국가자격증) 5. 직업상담사 2급(국가자격증) 6. 직업상담사 1급(국가자격증) 7. 놀이심리상담사 3급(민간자격증) 8. 범죄심리사 1급(민간자격증)
대학원 진학 후 (석사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상담심리사 2급(민간자격증) 10. 임상심리사 1급(국가자격증) 1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국가자격증) 1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국가자격증) 13. 전문상담교사 2급(국가자격증) 14. 전문상담교사 1급(국가자격증) 15. 전문상담사 1급(민간자격증) 16. 청소년상담사 2급(국가자격증) 17. 청소년상담사 1급(국가자격증) 18. 놀이심리상담사 2급(민간자격증) 19. 놀이심리상담사 1급(민간자격증)
<p>* 단, 자세한 내용은 세부자격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p>	

조사일: 2016.02.02.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 1) 발행처: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kacd.kr/>
- 3) 지원자격: 4년제 대학의 상담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 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4) 학회지정교과목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 일람표

구분	영역별 과목	유사과목
필수	① 상담 및 지도	개인 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상담, 상담연구방법, 생활지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필수 선택	② 검사 및 진단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검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측정이론, 심리평가, 진로심리검사
	③ 가족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족복지 및 노인 간호, 가족발달이론,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태학,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부모학, 아동학, 여성학, 노년학
	④ 집단 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
	⑤ 성격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일반 선택	⑥ 발달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⑦ 학습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⑧ 진로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⑨ 정신건강	임상심리, 건강심리학, 정신건강, 아동건강교육,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지도사 1급 인정 과목

구분	영역별 과목	인정과목
필수	①상담 및 지도	상담이론과 실제,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노인심리 및 상담,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 상담수퍼비전 및 실습
필수 선택	②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 및 실습, 상담심리측정 및 통계
	③가족	가족상담
	④집단 상담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⑤성격	성격심리학
일반 선택	⑥발달	발달심리학
	⑦학습	학습심리학
	⑧진로	진로상담
	⑨정신건강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이상심리학

- 5) 자격신청: 위와 같이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학과에서 소정의 검정절차를 통과한 개인 또는 단체가 협의회로 신청할 수 있다.

2. 청소년상담사 3급

1) 발행처: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3) 지원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1년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아래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상담업무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예시내용 참조
 -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 ※ 민간상담기관
예시)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 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5)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 등급	상담 유형	실시 경력	비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 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 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 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 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 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 검사	3사례 이상 실시	

6) 자격절차



7) 시험절차

(1) 1차시험: 필기

필기 검정 교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교시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10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2교시 (선택)	-학습이론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택1	50분	

(2) 2차시험: 면접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8) 합격기준

(1)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필기시험 예정자로 결정함

(2) 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3. 전문상담사 2급

- 1) 발행처: 한국상담학회
-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ounselors.or.kr/>
- 3) 지원자격: 한국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연회비 모학회 & 분과학회비 완납한 자
- 4) 수련자격심사 신청자격
 - (1)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 (2)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표IV-4) 36학점이상 이수자
 - (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표IV-4) 12학점이상 이수자
 - (4)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2018년까지 적용)
 - (5)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1년~2014년 2급 전문상담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5) 수련생 등록 <표V-2>참고
 - (1) 수련생 범주 C(수련심사자격 (2),(3)해당): 180시간/1년/<표V-5>참고
 - (2) 수련생 범주 D(수련심사자격 (1),(4),(5)해당): 360시간/2년/<표V-6>참고
- 6) 자격절차
회원자격 -> 수련자격심사 -> 필기시험/수련심사 -> 면접 -> 연수 -> 자격검정절차완료

<표 V-2> 범주별 수련요건 요약					
자격등급		1급		2급	
범주구분		A	B(A+C)	C	D(C×2)
총 수련시간		540시간	720시간	180시간	36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4년 ¹⁾	1년	2년
수련요건 상세 설명표		<표 V-3>	<표 V-4>	<표 V-5>	<표 V-6>
개인상담	접수면접	-	20시간	20시간	40시간
	내담자 경험	20시간	30시간	10시간	20시간
	상담자 경험	180시간	240시간	60시간	120시간
	수퍼비전	50시간	70시간	20시간	40시간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40시간	50시간	10시간	20시간
	자율선택수련 ¹⁸⁾	70시간	70시간	-	-
	소계	360시간	480시간	120시간	24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90시간	120시간	30시간	60시간
	지도자 경험	80시간	105시간	25시간	50시간
	수퍼비전	10시간	15시간	5시간	10시간
	소계	180시간	240시간	60시간	120시간
기타요건	연차 학술대회 참여	1회	2회	1회	2회
	연수/학술 모임 참여	60시간 <small>(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5회 포함)</small>	80시간 <small>(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7회 포함)</small>	20시간 <small>(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2회 포함)</small>	40시간 <small>(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4회 포함)</small>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1사례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1사례	-	-
	사례보고서 제출	-	-개인상담: 1사례 -집단상담: 1사례	-개인상담: 1사례 -집단상담: 1사례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2사례
	연구실적	-3항목 중 택1	-3항목 중 택1	-	-

<표 V-5> 180시간/1년(C범주)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총 수련시간		180시간	
최소 수련기간		1년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내담자 경험	1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시간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상담자 경험	6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5개 포함 ▶ 심리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1)를 2종 이상 활용한 사례 5개 포함
	수퍼비전	20시간	▶ 수퍼바이저 및 심리검사 -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이 중 최소 4시간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1)를 2종 이상 활용한 사례로 수퍼비전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까지 허용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5시간 이상 이수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10시간	▶ 2인의 수련감독자가 토론자로 필참 그 중 최소 1인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본 학회의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
	소계	12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3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지도자 경험	25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 집단 유형 최소 1집단은 구조화 집단 ▶ 지도자 역할 최소 10시간은 (보조 아닌) 주 지도자 역할 ▶ 보조지도자로 참여한 집단의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수퍼비전	5시간	▶ 수퍼바이저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까지 허용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5시간 이상 이수
	소계	60시간	
기타요건	연차 학술대회	1회	
	연수/학술 모임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2회 이상 ▶ (사례발표회를 제외한) 분과/지역학회 연수/학술모임 1회 이상 ▶ 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교육연수기관에서는 수련감독자가 진행)
	사례보고서	-개인상담 1사례 -집단상담 1사례	▶ 개인상담 5회기 이상 지속 사례 1회기 분량 축어록 포함 ▶ 집단상담 10시간 이상 지속 사례 1시간 분량 축어록 포함 ▶ 집단상담 사례보고서는 본인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제출

<표 V-6> 360시간/2년(D범주)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총 수련시간	360시간		
최소 수련기간	2년		
개인상담	접수면접(보조)	40시간	
	내담자 경험	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시간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회기) 이상 지속
	상담자 경험	1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0개 포함 ▶ 심리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²⁾를 2종 이상 활용한 사례 10개 포함
	수퍼비전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 및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이 중 최소 8시간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²⁾를 2종 이상 활용한 사례로 수퍼비전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5시간 이상 이수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의 수련감독자가 토론자로 필참 그 중 최소 1인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본 학회의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
	소계	24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6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지도자 경험	5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 집단 유형 최소 2집단은 구조화 집단 ▶ 지도자 역할 최소 20시간은 (보조 아닌) 주 지도자 역할 ▶ 보조지도자로 참여한 집단의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수퍼비전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5시간 이상 이수
	소계	120시간	
기타요건	연차 학술대회	2회	
	연수/학술 모임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4회 이상 ▶ (사례발표회를 제외한) 분과/지역학회 연수/학술모임 2회 이상 ▶ 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교육연수기관에서는 수련감독자가 진행)
	사례보고서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2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5회기 이상 지속 1사례 당 1회기 분량 축어록 포함 ▶ 집단상담 10시간 이상 지속 1사례 당 1시간 분량 축어록 포함 ▶ 집단상담 사례보고서는 본인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제출

상담관련 교과목:

- ① <표 IV-4>에 영역별로 나열된 과목을 의미함. 상담관련 과목 목록에 포함된 교과목을 정해진 기준 이상 수강했을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은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 정도를 '학과나 '전공' 같은 행정적 기준이 아닌 '수강 교과목' 같은 실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려는 취지로 정한 것임.
 ② 이 과목들을 수강할 때에는 <표 IV-4>에 음영으로 표시된 8개 상담학 영역(① 상담이론 ② 심리검사 ③ 집단상담 ④ 학습과 발달 ⑤ 성격과 정신건강 ⑥ 가족상담 ⑦ 진로상담 ⑧ 상담실습) 중 최소 4개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③ <표 IV-4>에 나열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담관련 과목' 인정여부는 수련자격심사 과정에서 자격검정위원회가 결정함

<표IV-4> 상담관련 교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상담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 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및교육프로그램개발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과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학습과 발달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발달심리 발달심리연구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응용발달심리학
성격과 정신건강	성격이론 성격심리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및 적응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가족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진로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생애와 진로 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상담실습 ⁷⁾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학교 현장실습
상담실제	개인상담실제 상담연접의 이론과 실제 치료적 면접 및 실습 상담실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상담기법 상담기법 및 실습	연구방법	상담연구방법 상담(상담학)연구방법론 사례연구방법론(연구방법) 심리통계	아동청소년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아동청소년상담과심리치료 청소년상담 청소년상담의 실제 청소년비행 및 약물상담 청소년문제상담 아동, 청소년 행동장애 청소년적응문제 세미나	특수아상담	특수아상담 특수아 행동지도 정서행동장애아 교육연구 학습장애아 교육연구 영재아 상담
상담자 교육 수퍼비전	개인상담수퍼비전 상담자교육수퍼비전 상담심리지도감독 상담교육및수퍼비전실습 상담자핵심역량개발과훈련 집단상담수퍼비전	상담윤리	상담윤리 상담과 심리치료 윤리 상담윤리와 철학	정신분석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치료 정신분석세미나 정신역동적치료	인간중심상담	인간중심상담 인간중심치료 인간중심상담원서강독 인본주의 심리학
생활지도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연구	매체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음악치료	인지상담	인지행동상담 인지치료	행동주의	행동주의 상담 행동수정
대상관계	대상관계심리치료 분석심리학 고급분석치료	현실치료	선택이론 현실요법 현실치료세미나	단기상담	단기상담의 실제 단기 및 위기상담	실존상담	실존치료 형태치료세미나 조월영성상담세미나
학교상담	학교상담 학교상담의 실제 학교상담 세미나 학교상담의 최근 동향 학교부적응 상담 학습상담 학업상담	다문화상담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와 상담 다문화상담	긍정심리	긍정심리학 긍정심리상담	상담영역	위기상담 성상담 비행상담 약물상담 중독상담 도박 중독 상담 사이버 상담 목회상담
기타	부모교육 및 상담, 동양문화와 상담, 조직행위론과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실습, 상담의 최근 동향						

7) 상담실습이란 교내의 상담기관에 파견되어 각종 상담관련 활동(접수, 상담, 심리검사 등)을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의미함. 즉 강의실에서 상담기법을 훈련하거나 상담실 소개를 하는 내용의 교과목은 제외됨.

7)필기시험

구분	시험 영역 및 과목	출제형태	합격기준
2급 (7개 영역 중 6개 영역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윤리- 상담윤리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집단상담과 실제 ·평가와 진단- 심리검사와 상담 ·상담연구- 상담연구방법론 ·진로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 	<p>과목당 25문항 5지 선다형</p>	<p>▶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 상이고 평균 60점 이상(부분 합격 없 음) ▶합격 유효기간: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만 5년 (예: 2015년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경 우 2015년~ 2019 년까지 유효)</p>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기간	입실시간
2급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와 상담 	<p>과목당 30분 총 90분</p>	<p>시험시간 30분전까지</p>
	2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윤리 ·상담연구방법론 ·진로상담 ·가족상담 	<p>과목당 30분 총 120분</p>	<p>시험시간 10분전까지</p>

8)면접시험

구분	시험과목	출제형태	합격기준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개념화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형 또는 작업형 을 병행하여 실시 ·각 영역에서 1문항 씩 총 2문항 	<p>-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합격 유효기간: 필기시험 합격 유효 연도까지 재 응시 가능 (예: 2015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 시험 유효기간인 2019년까지 면접시험 에 재 응시 가능)</p>

4. 임상심리사 2급

- 1)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2)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3)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Q-net.or.kr
- 4)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단, 대학원에서 '심리'와 관련된 석사를 취득한 자는 실무경력 없이 시험에 응시 가능)
- 5) 실습수련 및 실무경력인정 범위

구분	실습수련	실무경력	비고
누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 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언제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X)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O)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함
어디서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넓음
무엇을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어떻게	실습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	
왜	(전공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보건 임상심리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 (자아실현 등)	

- 6) 시험과목
 - 필기: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50분)
 - 실기: 임상실무(시험시간-3시간)
- 7)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5. 직업상담사 2급

- 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2)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3)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Q-net.or.kr
- 4) 시험시기: 1년에 3~4회
- 5) 시험과목
 - 필기 1.직업상담학(20문제) 2.직업심리학(20문제) 3. 직업정보론(20문제) 4.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 5과목
 - 실기 : 직업상담실무
- 6)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 150분
 - 실기 : 필답형 150분
- 7)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6. 직업상담사 1급

- 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2)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3)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Q-net.or.kr
- 4) 시험시기: 1년에 2회
- 5) 시험과목
 - 시험과목
 - 필기 : 1.고급직업상담학(20문제) 2.고급직업심리학(20문제) 3.고급직업정보론(20문제) 4.노동시장론(20문제) 5.노동관계법규(20문제)
 - 실기 : 직업상담실무
- 6)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150분)
 - 실기 : 작업형 (3시간정도)
- 7)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7. 놀이심리상담사 3급

- 1) 관련부처: 없음
- 2) 시행기관: 한국놀이치료학회
-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playtherapykorea.or.kr/>
- 4) 자격구분: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본 학회에서는 놀이치료 관련 학문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연수, 구술면접 등 자격조건을 구비한 분들에게 놀이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 5) 자격요건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3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인자
 2.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3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조)
 4.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놀이심리상담사는 3급은 자격연수에 윤리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 6) 시험과목
[놀이심리상담사 3급] 아동발달/ 놀이치료

8. 범죄심리사 1급

1) 발행처: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ksppa.cafe24.com/index.html>

3) 지원자격 및 자격시험절차:

[범죄심리사 1급]

1.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 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3.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4) 1급 교육 신청 대상자

- 범죄심리사 2급 소지자
- 심리학 및 사회복지 국가자격증 소지자(상담심리치료학과도 해당됨)
- 타 심리학회 자격증 소지자
- 수련 경력이 있는 자
- 2013년 전기 범죄심리사 1급 교육 환불자

- 각 대학 심리학 전공, 복수전공 및 범죄심리학 전공자 4학년(2011년도 전반기 기준으로) 이상을 대상으로 함

- 하루 8시간씩 2주간 총 80시간 교육 → 평가시험 실시

※ 자격규정상 범죄심리사 1급의 총 교육이수 시간은 100시간입니다. 따라서 80시간을 본 교육으로 이수한 후, 나머지 20시간은 면제과목으로 면제를 받거나 또는 추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해야합니다. 아래의 과목을 대학,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괄호안의 시간만큼 면제

교과목명	인정시간	교과목명	인정시간
범죄심리학	6	성격심리학	3
법심리학	6	이상심리학	3
사회심리학	6	임상심리학	3
상담심리학	6	범죄학	3
심리평가	6	법학개론	3
발달심리학	3	형사정책	3

5) 자격시험과목: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9. 상담심리사 2급

- 1) 발행처: (사)한국상담심리학회
-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krcpa.or.kr/default.asp>
- 3) 자격절차



4) 지원자격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자

5)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24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

- 주의사항: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단, 수련 받을 당해연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단, 학회 입회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2. 학부과정 중 과목이수(상담 3과목, 기초3과목)

관련 교과목	
상담관련과목 (3과목 이상)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사례실습,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기초과목 (3과목 이상)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조사방법론 등

5) 시험절차

- 필기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수련내용충족:

(1)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2) 최소수련내용 : <표 2>참고

〈표2〉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 내용(상담심리사 2급)

영역		내용
접수면접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수퍼비전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참여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참여
	실시	-
	수퍼비전	-
심리평가	검사실시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수퍼비전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

10. 임상심리사 1급

- 1)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2)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Q-net.or.kr
- 3)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실습수련 및 실무경력인정 범위

구분	실습수련	실무경력	비고
누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3, 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언제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X)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O)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함
어디서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넓음
무엇을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어떻게	실습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	
왜	(전공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보건 임상심리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 (자아실현 등)	

- 5) 시험과목
 - 필기: 임상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50분)
 - 실기: 고급임상실무(필답형, 3시간)
- 6)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1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1)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2) 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3)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mw.go.kr

4)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자격증 발급일 기준) 만 5년 이상 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경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사 후 1급으로 승급된다.

5) 수련교과과정

구분(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2급	이론	합계	1,000	-	-	-	-
		소계	150	-	-	-	-
		개인심리치료 I	30	-	-	-	-
		심리평가 I	30	-	-	-	-
		정신사회재활이론 면담기법	30	-	-	-	-
			20	-	-	-	-
		정신병리학 (이상 심리학)	30	-	-	-	-
		정신약물학	10	-	-	-	-
	실습	소계	830	-	-	-	-
		심리평가	330	-	-	-	-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	-	-	-
		정신사회재활	150	-	-	-	-
		개별사례분석	200	-	-	-	-
	학술활동	-	20	-	-	-	-

6) 인정과목(대학교기준)

대학 임상심리관련 과목

•가. 필수과목(4과목)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 과목 중 택 2)

-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관련협회 혹은 단체의 의견을 들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자격시험

필기 검정 교과목

개인심리치료 I / 심리평가 I / 정신사회재활이론 / 면담기법 /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정신약물학

-합격기준: 1과목(1, 2급 공통과목)의 점수 60점 이상 (2급 이수 과목(1급 1년차 과목과 동일, 6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

1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1) 발행처 : 보건복지부

2)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mw.go.kr

3) 지원자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4) 수련교과과정

구분(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1급	이론	합계	1,000	합계	1,000	합계	1,000
		소계	150	소계	150	소계	100
		개인심리치료 I	30	개인심리치료 II	30	집단치료 II	20
		심리평가 I	30	심리평가 II	30	임상심리연구방법	20
		정신사회재활이론	30	정신사회재활실제	30	가족치료	15
		면담기법	20	집단치료 I	30	소아청소년심리	15
		정신병리학 (이상 심리학)	30	신경심리평가	20	장애	-
		정신약물학	10	지역사회심리학	10	노년기심리장애	15
		-	-	-	-	심리학격자문	15
		소계	830	소계	830	소계	880
	실습	심리평가	330	심리/신경심리평가	280	심리평가	250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개인/집단심리치료	200	개인/집단심리치료	280
		정신사회재활	150	정신사회재활	150	정신사회재활	150
		개별사례분석	200	개별사례분석	200	개별사례분석	200
	학술활동	-	20	-	20	-	20

5) 자격시험

필기 검정 교과목

개인심리치료 I / 심리평가 I / 정신사회재활이론 / 면담기법 /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 정신약물학 / 개인심리치료 II / 심리평가 II / 정신사회재활실제 / 집단치료 I 신경
심리평가 / 지역사회심리학 / 집단치료 II / 임상심리 연구방법 가족치료 / 소아청소년
심리장애 / 노년기 심리장애 / 심리학적 자문

- 합격기준: 3과목(1, 2, 3년차 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 2, 3년차 과목(18개 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

※1급 수련생(석사학위 취득 후)으로 등록하여 1년차 수련을 마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련생의 경우, 학습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추후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2급 취
득 시 합격했던 공통교과목(2급 이수 과목, 1급 1년차 과목)은 면제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관계도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 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3. 전문상담교사 2급

- 1) 발행처: 교육부
- 2) 시행기관: 교육대학원
- 3) 검정대상: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4) 검정자격: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 과목(상담이론과실제, 집단상담, 심리검사, 가족상담, 진로상담,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전공학사로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수료하고 들어온 학생에 한해서만 해당.

14. 전문상담교사 1급

- 1) 발행처: 교육부
- 2) 시행기관: 교육대학원
- 3) 검정대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대학원 입학 전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같은 급의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4) 검정자격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자격증 수여: 비학위과정 이수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5.26)

15. 전문상담사 1급

- 1) 발행처: 한국상담학회
-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ounselors.or.kr/>
- 3) 지원자격: 한국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연회비 모학회 & 분과학회비 완납한 자
- 4) 수련자격심사 신청자격
 - (1) 2급 자격증 취득자
 - (2) 상담학 전공(표IV-3) 석사학위 취득자
 - (3)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자(단, 36학점에는 박사과정 교과목이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4) 2011년~2014년 1급 전문상담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5) 수련생 등록
 - (1) 수련생 범주 A(수련심사자격 (3) 해당): 540시간/3년/표V-3 참고
 - (2) 수련생 범주 B(수련심사자격 (1),(2),(4) 해당): 720시간/4년/표V-4 참고
- 6) 자격절차
회원자격 -> 수련자격심사 -> 필기시험/수련심사 -> 면접 -> 연수 -> 자격검정절차완료

<표V-2> 범주별 수련요건 요약					
자격등급		1급		2급	
범주구분		A	B(A+C)	C	D(Cx2)
총 수련시간		540시간	720시간	180시간	36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4년 ¹⁾	1년	2년
수련요건 상세 설명표		<표V-3>	<표V-4>	<표V-5>	<표V-6>
개인상담	접수면접	-	20시간	20시간	40시간
	내담자 경험	20시간	30시간	10시간	20시간
	상담자 경험	180시간	240시간	60시간	120시간
	수퍼비전	50시간	70시간	20시간	40시간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40시간	50시간	10시간	20시간
	자율선택수련 ¹⁸⁾	70시간	70시간	-	-
	소계	360시간	480시간	120시간	24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90시간	120시간	30시간	60시간
	지도자 경험	80시간	105시간	25시간	50시간
	수퍼비전	10시간	15시간	5시간	10시간
	소계	180시간	240시간	60시간	120시간
기타요건	연차 학술대회 참여	1회	2회	1회	2회
	연수/학술 모임 참여	60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5회 포함)	80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7회 포함)	20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2회 포함)	40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모학회세션 4회 포함)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1사례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1사례	-	-
	사례보고서 제출	-	-개인상담: 1사례 -집단상담: 1사례	-개인상담: 1사례 -집단상담: 1사례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2사례
	연구실적	-3항목 중 택1	-3항목 중 택1	-	-

<표 V-3> 540시간/3년(A범주)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총 수련시간		54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상담자 경험	18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수 10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0개 포함 ▶ 심리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⁹⁾를 3종 이상 활용한 사례 10개 포함
	수퍼비전	5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 및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심리검사 이 중 최소 20시간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⁹⁾를 3종 이상 활용한 사례로 수퍼비전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최소 5시간 이상 이수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의 수련감독자가 토론자로 필참 그 중 1인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자율선택수련	7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학회의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
	소계	360시간	▶ 내담자 경험 상담자경험 수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9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지도자 경험	8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최소 40시간은 (보조 아닌) 주 지도자 역할 ▶ 집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시간 이상 지속된 1집단 필수(주/보조지도자 또는 구조화/비구조화 무관) -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수련감독 확인서명 필요)
	수퍼비전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최소 5시간 이상 이수
	소계	180시간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연수/학술모임	6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5회 이상 ▶ (사례발표회를 제외한) 분과/지역학회 연수/학술모임 1회 이상 ▶ 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교육연수기관에서는 수련감독자가 진행)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 개인상담 2사례 - 집단상담 1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최소 2시간 수퍼비전 이수한 사례로 발표 ▶ 집단상담 3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소 2시간 수퍼비전 이수한 사례로 발표 ▶ 집단상담은 본인이 주 지도자로 참여한 집단사례로 발표
	연구실적	우측 3항목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 논문 1편 (동재후보지 이상) ▶ 저역서 1권 (*적합성 심의 별도)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포스터) 1회

<표 V-4> 720시간/4년(B범주)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영역별 수련시간 산출 근거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기간	시간 수	
총 수련시간	720시간	1년	180시간	▶ 총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한 수련 순서 무관
		3년	54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1년	1년	▶ 수련요건을 연도에 따라 균형 있게 배분할 경우 720시간을 3년에 수련 가능
		3년	3년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1년 20시간	
	내담자 경험	30시간	1년 10시간 3년 20시간	▶ 상담자 -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시간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상담자 경험	240시간	1년 60시간 3년 180시간	▶ 회기 수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5개 포함 - 10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0개 포함 ▶ 심리검사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 ²⁰⁾ 를 2종 이상 활용한 사례 5개 포함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 ²⁰⁾ 를 3종 이상 활용한 사례 10개 포함
	수퍼비전	70시간	1년 20시간 3년 50시간	▶ 수퍼바이저 및 심리검사 - 수퍼바이저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이 중 최소 4시간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²⁰⁾ 를 2종 이상 활용한 사례로 수퍼비전 - 이 중 최소 20시간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²⁰⁾ 를 3종 이상 활용한 사례로 수퍼비전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최소 5시간 이상 이수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50시간	1년 10시간 3년 40시간	▶ 2인의 수련감독자가 토론자로 필참 그중 1인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 본 학회의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
	자율선택 수련	70시간	3년 70시간	▶ 내담자 경험 상담자경험 수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중 자율 수련
	소계	480시간	1년 120시간 3년 36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120시간	1년 30시간 3년 9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 지도자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지도자 경험 (보조지도자)	105시간	1년 25시간 3년 8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최소 50시간 - 나머지 55시간의 역할은 자유 (단, 55시간 중 보조지도자로 참여한 집단의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 것) ▶ 집단 유형 - 15시간 이상 지속된 구조화 1집단 필수(지도자 역할 자유) - 30시간 이상 지속된 1집단 필수(보조지도자/주 지도자 또는 구조화/비구조화 무관)
	수퍼비전	15시간	1년 5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일반 또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3년	10시간	▶ 수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시간 수 한 수퍼바이저에게 5시간 이상 이수
	소계	240시간	1년	60시간	
			3년	180시간	
기타요건	연차 학술대회	2회	1년	1회	
			3년	1회	
	연수/학술 모임	80시간	1년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7회 이상 ▶ (사례발표회를 제외한) 분과/지역학회 연수/학술모임 2회 이상
			3년	60시간	▶ 기타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교육연수기관에서는 수련감독자가 진행)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개인상담 2사례 -집단상담 1사례	1년	-	▶ 개인상담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최소 2시간 수퍼비전 이수한 사례로 발표 ▶ 집단상담 3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소 2시간 수퍼비전 이수한 사례로 발표
			3년	개인사례 집단사례	▶ 집단상담 발표사례는 본인이 주 지도자로 참여한 집단사례로 발표 ▶ 개인상담 5회기 이상 지속 사례 1회기 분량 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개인상담 1사례 -집단상담 1사례	1년	개인사례 집단사례	▶ 집단상담 10회기 이상 지속 사례 1시간 분량 축어록 포함	
		3년	-	▶ 집단상담 보고서는 본인이 지도자 역할을 한 사례보고서 제출	
연구실적	우측 비교의 3항 목 중 택1	1년	-	▶ 상담관련 논문 1편 (동재후보지 이상)	
		3년		▶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포스터) 1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표는 상담수련 경력 3년에 해당하는 요건(540시간)과 2급 전문상담사 상담수련경력 1년(180시간)에 해당하는 요건을 통합하여 총 720시간을 기준으로 제작한 것임 ▶ 자격규정상 최소 수련기간이 4년임. 단, 수련내용을 매년 180-240시간으로 균형 있게 배분할 경우 720시간을 3년에 수련 허용 ▶ 위 표에서 '영역별 수련시간 산출 근거'는 자격규정에 명시된 '1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수련 시간과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영역별 수련시간(노란색 부분)을 충족하는 한, 수련을 '1년 해당 분' 또는 '3년 해당 분'과 같은 순서에 따라 받을 필요는 없음. 				

상담학 영역

아래 <표 IV-3>에 표시된 8개 상담학 영역 중 필수영역(상담이론)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영역에서 영역별 최소 1과목씩, 총 5과목 이상 12학점 이상(과목당 2학점인 경우는 6과목)을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상담학 전공으로 인정됨. 수련자격 심사에서 상담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 인정될 경우 2급 자격증 없이 바로 1급 준비수련생(720시간/4년) 범주에 속하여 수련을 시작할 수 있음

상담관련 교과목:

- ① <표 IV-4>에 영역별로 나열된 과목을 의미함. 상담관련 과목 목록에 포함된 교과목을 정해진 기준 이상 수강했을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은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 정도를 '학과나 전공' 같은 행정적 기준이 아닌 '수강 교과목' 같은 실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려는 취지로 정한 것임.
- ② 이 과목들을 수강할 때에는 <표 IV-4>에 음영으로 표시된 8개 상담학 영역(① 상담이론 ② 심리검사 ③ 집단상담 ④ 학습과 발달 ⑤ 성격과 정신건강 ⑥ 가족상담 ⑦ 진로상담 ⑧ 상담실습) 중 최소 4개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③ <표 IV-4>에 나열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담관련 과목' 인정여부는 수련자격심사 과정에서 자격검정위원회가 결정함.

<표IV-3> 상담학 영역('상담이론'은 필수영역, 나머지 7개는 선택영역)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교과목 영역	관련과목
상담이론 (필수)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 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학습과 발달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성격이론 성격심리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및 적용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진로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생애와 진로 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성격과 정신건강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가족상담					

6) 상담실습이란 교내의 상담기관에 파견되어 각종 상담관련 활동(집수, 상담, 심리검사 등)을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의미함. 즉 강의실에서 상담기법을 훈련하거나 상담실 소개를 하는 내용의 교과목은 제외됨

<표IV-4> 상담관련 교과목

교과목 분류	관련과목	교과목 분류	관련과목	교과목 분류	관련과목	교과목 분류	관련과목
상담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 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심리 검사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후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집단 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및교육프로그램개발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과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학습 과 발달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발달심리 발달심리연구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총괄발달심리학						
성격 과 정신 건강	성격이론 성격심리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이론 및 적용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가족 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진로 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성애와 진로 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상담 실습기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학교 현장실습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상담 실제	개인상담실제 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 치료적 면접 및 실습 상담실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상담기법 상담기법 및 실습	연구 방법	상담연구방법 상담(상담학)연구방법론 상담심리연구방법 사례연구방법론(연구방법) 심리통계	아동 청소년 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아동청소년상담과심리치료 청소년상담 청소년상담의 실제 청소년비행 및 약물상담 청소년문제상담 아동, 청소년 행동장애 청소년적용문제 세미나	특수아 상담	특수아상담 특수아 행동지도 정서행동장애아 교육연구 학습장애아 교육연구 영재아 상담
상담자 교육 수퍼비전	개인상담수퍼비전 상담자교육수퍼비전 상담교육수퍼비전 상담심리지도감독 상담교육및수퍼비전실습 상담자핵심역량개발과훈련 집단상담수퍼비전	상담 윤리	상담윤리 상담과 심리치료 윤리 상담윤리와 철학	정신 분석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치료 정신분석세미나 정신역동적치료	인간 중심 상담	인간중심상담 인간중심치료 인간중심상담원서강독 인본주의 심리학
생활 지도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연구	마체 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유희치료 음악치료	인지 상담	인지행동상담 인지치료	행동 주의	행동주의 상담 행동수정
대상 문제	대상관계심리치료 분석심리학 고급분석치료	현실 치료	선택이론 현실요법 현실치료세미나	단기 상담	단기상담의 실제 단기 및 위기상담	실존 상담	실존치료 행태치료세미나 초월영성상담세미나
학교 상담	학교상담 학교상담의 실제 학교상담 세미나 학교상담의 최근 동향 학교부적응 상담 학습상담 학업상담	다문화 상담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와 상담 다문화상담	긍정 심리	긍정심리학 긍정심리상담	상담 영역	위기상담 성상담 비행상담 약물상담 중독상담 도박 중독 상담 사이버 상담 복합상담
기타	부모교육 및 상담, 동양문화와 상담, 조직행위론과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실습, 상담의 최근 동향						

가) 상담실습이란 교내의 상담기관에 파견되어 각종 상담관련 활동(집수, 상담, 심리검사 등)을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 하는 교과목을 의미함. 즉 강의실에서 상담기법을 훈련하거나 상담실 소개를 하는 내용의 교과목은 제외됨.

7)필기시험

구분	시험 영역 및 과목	출제형태	합격기준
1급 (6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철학- 상담철학과 윤리 ·상담 이론과 실제-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평가와 진단- 심리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임상지도-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과목당 25문항 5지 선다형	<p>▶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부분 합격 없음)</p> <p>▶합격 유효기간: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만 5년 (예: 2015년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경우 2015년~ 2019년까지 유효)</p>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기간	입실시간
1급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철학과 윤리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과목당 30분 총 90분	시험시간 30분전까지
	2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평가와 진단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과목당 30분 총 90분	시험시간 10분전까지

8)면접시험

구분	시험과목	출제형태	합격기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설계 ·상담수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형 또는 작업형을 병행하여 실시 ·각 영역에서 1문항씩 총 2문항 	<p>-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p> <p>-합격 유효기간: 필기시험 합격 유효 연도까지 재 응시 가능 (예: 2015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 시험 유효기간인 2019년까지 면접시험에 재 응시 가능)</p>

16. 청소년상담사 2급

1) 발행처: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3)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1년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아래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예시) 1급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5)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6) 자격절차



7) 시험절차

(1) 1차시험: 필기

필기 검정 교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교시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10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2교시 (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50분	

(2) 2차시험: 면접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8) 합격기준

(1)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필기시험 예정자로 결정함

(2) 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17. 청소년상담사 1급

1) 발행처: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3)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1년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아래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예시) 1급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5)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4) 자격절차



5) 시험절차

(1) 1차시험: 필기

필기 검정 교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교시 (필수)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75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2교시 (선택)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50분	

(2) 2차시험: 면접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8) 합격기준

(1)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필기시험 예정자로 결정함

(2) 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18. 놀이심리상담사 2급

1) 관련부처: 없음

2) 시행기관: 한국놀이치료학회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playtherapykorea.or.kr/>

4) 자격구분: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치료 관련 학문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놀이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10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임상수련, 슈퍼비전, 사례발표 및 구술시험 등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분들에게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5) 자격요건

[놀이심리상담사 2급] -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놀이심리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1 >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심리상담사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별표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관련)

이수과목			자격연수 필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I (다음 과목중 3과목 이상)	선택과목 II (다음 과목중 2과목 이상)	놀이치료실제 부모상담실제
놀이치료	인지치료	건강심리학	
발달이론	행동치료	신경심리학	
성격이론	정신분석	생리심리학	
상담이론	분석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평가	미술치료	아동정신의학	
	음악치료	학습심리학	
	단기치료	인지발달	
	가족치료	교육심리학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	
		정신건강	
		청년심리학	

6) 시험과목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치료 이론 / 상담이론

※ 반드시 놀이심리상담사 3급을 취득하셔야만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9. 놀이심리상담사 1급

1) 관련부처: 없음

2) 시행기관: 한국놀이치료학회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playtherapykorea.or.kr/>

4) 자격구분: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가)은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시험과 수련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취득할 수 있으며, 놀이심리상담사 1급(나)는 놀이치료 관련분야에서 교수를 하는 분들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요건

[놀이심리상담사 1급(가)] - 놀이심리상담사 1급(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 별표 2 >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심리상담사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4.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심리상담사 1급(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놀이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7.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놀이심리상담사 1급(나)] - 놀이심리상담사 1급(나)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2>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는 자. (단, 교수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동안 임상 및 놀이치료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교수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기간은 3년)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심리상담사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심리상담사 1급(나)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놀이치료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7.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자

<별표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6조, 제7조 관련)

필수과목	선택과목 I (다음 과목중 5과목 이상)	선택과목 II (다음 과목중 4과목 이상)
놀이치료 슈퍼비전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이론	분석학적 놀이치료	음악치료
아동정신병리	아동중심 놀이치료	단기치료
	발달 놀이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집단상담
	모래 놀이치료	연구방법론
	게임 놀이치료	정신병리학
	집단 놀이치료	부모상담
	가족 놀이치료	청소년상담
	생태학적 놀이치료	문제별 아동상담

6) 시험과목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치료이론 / 놀이치료 방법 및 기술 / 놀이치료의 적용 / 연구방법론